

## 2025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연장)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2025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변경사항>

공고 및 신청기간		공고 및 신청기간
2025. 1. 24. ~ 2. 21.	→	2025. 1. 24. ~ <b>2. 28.</b>

2025년 2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확인사항 ※

★ 본 사업 신청 시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회원가입 및 신청 하여야 합니다.** ★

\* 집적지구 유형은 불가피한 경우, 공단에 사전 문의를 통해 과제책임자로 신청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빌미로 대가(서류작성 대행 수수료 등) 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브로커 등)는 본 사업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등 위법사실 확인시 고발 조치** 될 수 있으며, **신청소공인의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정부지원 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사업 신청.접수는 **소상공인24(www.sbiz24.kr)**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3. 동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사업(지자체 등) 수혜자의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4. 사업 신청시 마이데이터 동의는 필수이며, 미동의시 공고문 내 제출서류를 참고 하여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안전환경조성(중대재해) 유형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확인가능 서류를 필수로 제출 하여야 하며 전년도(2024년) 월별 평균 근로자가 5인 이상(대표자 제외)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 직전 사업연도('24년 1월~12월)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6.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항목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최종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은 불가합니다.

7. 최종선정 후 ①공단, ②전문기관, ③소공인, ④공급업체간 **4자계약** 체결예정으므로, 계약서 작성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나. 지원규모 : 1,650개사 내외(안전환경 950개사 내외, 에너지효율 700개사 내외)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정산까지 2개월 이내

\* 총 사업기간은 2025년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마. 신청접수 및 선정

- (사업신청)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필수서류를 소상공인24(www.sbiz24.kr)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신청

구분	신청방법
사업조회	(1단계) <u>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 접속</u> → <u>회원가입(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 必, 공동대표인 경우 주 대표자로 가입)</u> → 로그인 (2단계) 홈페이지 상단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2025년 소공인 클린제조 환경조성 사업” 선택
신청서 제출	(1단계) “2025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선택 (2단계) [업체선택] [개인정보동의] [마이데이터제공동의] [자가진단] [신청정보작성] 등 각 탭 순서대로 진행 (3단계) 신청정보 작성 후 신청완료
참고사항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24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1644-5302'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선정평가) 기본심사 → 현장실사(평가) → 선정

\* 안전환경조성(집적지구) 추천기관의 경우, 서류평가만 실시하여 선정

**바. 지원내용 : 안전환경조성, 에너지효율개선 중 1개 항목 선택지원**

\*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가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비 (70%)	자부담 (30%)	
안전환경 조성	중대재해	- (필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교육·컨설팅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必 서류 제출	350개사 내외	630만원 이하	270만원 이상
	집적지구 **	- (필수)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컨설팅 -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대상 : 특화·복합센터 운영 기관, 소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협단체)	2개 기관 내외 (100개사)	350만원 이하	150만원 이상
	백년 소공인 ***	- (필수)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컨설팅 -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대상 : 중기부에서 선정한 백년소공인	50개사 내외	350만원 이하	150만원 이상
	일반	- (필수)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컨설팅 -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450개사 내외	350만원 이하	150만원 이상
에너지 효율개선	백년 소공인 ***	- (필수) 에너지효율 인식제고를 위한 수준진단 설문 참여 및 교육·컨설팅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 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대상 : 중기부에서 선정한 백년소공인	50개사 내외	350만원 이하	150만원 이상
	일반	- (필수) 에너지효율 인식제고를 위한 수준진단 설문 참여 및 교육·컨설팅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 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650개사 내외	350만원 이하	150만원 이상
소 계			1,650개사 내외	-	-

\*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지원(50만원 미만)

\*\* 집적지구 유형의 경우, 추천기관 2곳 내외를 선정하여 소공인 100개사 내외를 지원

\*\*\* 백년소공인 시설개설지원 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 2. 안전환경조성(중대재해, 일반, 백년소공인), 에너지효율개선

### 가. 신청대상

-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 (정의)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업종코드 : C10~C34, **[붙임1]** 참고)
  - (지원 제외)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25년도 창업 업체

### 나. 자격요건

- 신청 마감일 기준 (**'25.2.28.**)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내용
휴·폐업 및 부도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중복 제한	·동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백년소공인 시설개선지원 수혜소공인 포함)

다. 신청기간 : '25. 1. 24.(금) ~ '25. 2. 28.(금), 18:00까지

라.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절차

- 1단계** 소상공인24(www.sbiz24.kr)접속 → 회원가입(**대표자 회원가입**→사업자 정보 입력)및 로그인
- 2단계**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선택, 모집공고 확인
- 3단계** [개인정보동의], [마이데이터제공동의], [자가진단] 등 각 순서대로 진행
- 4단계** [신청정보작성] 내용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후 [신청서제출] 클릭하여 접수완료

- 참고 사항**
-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 ※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유에 관계 없이(시스템 오류 등) 마감시간(18:00 정각)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 ※ 시스템문의 **1644-5302**

## 마. 신청서류

구분	연번	제출서류	비고	
필수 서류	1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input type="checkbox"/>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소상공인24 內 작성 (www.sbiz24.kr)	
	2	<input type="checkbox"/>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명의 서류 모두 제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세무서 및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www.hometax.go.kr)	
	3	2개 中 택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li> <li>▶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li> </ul>		
※ 단,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b>[붙임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b> 작성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선택서류 (해당시 제출)	4	<input type="checkbox"/> 가점증빙서류 *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P.8 가점항목 참고		
<b>마이데이터 미동의시 아래(4~8번) 추가 서류 제출 필수</b> * 마이데이터 동의시 모두 자동 제출되어 편리합니다.(동의시 제출란 없음)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서류	5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증명원(업태 : 제조업 必)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6	3개 中 택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li> <li>▶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li> <li>▶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li> </ul>	
		7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8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마이데이터 동의하여도, 조회 불가하거나 상황에 따라 서류 미(오)제출 시 추후 서류 보완요청 할 수 있음

**바. 평가절차: 기본심사\* → 현장실사(평가) → 최종선정**

- **(기본심사)** 소공인 여부, 필수 제출서류 완비 여부를 포함하여 심사 지표에 따라 70점 만점으로 평가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

- 분야별 심사지표에 따라 70점 만점의 42점(만점의 60%, 가점 5점 포함) 미만시 탈락 처리

<안전환경조성 기본심사 지표>

평가 항목	심사 지표	배점
기본 심사 (70점)	· 안전환경 개선의 필요성	20
	· 안전환경 개선의 시급성	20
	· 업종별 산업재해율*	20
	· 상시근로자수	10
가점 (5점)	· 집적지구소공인, 풍수해보험가입자,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안전사고 유경험업체,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업체	5

<에너지효율개선 기본심사 지표>

평가 항목	심사 지표	배점
기본 심사 (70점)	· 에너지절감의 필요성	20
	· 에너지절감의 시급성	20
	· 제조업종별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소비량 ↑, 우선평가)	20
	· 상시근로자수	10
가점 (5점)	· 집적지구소공인, 풍수해보험가입자,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안전사고 유경험업체,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업체	5

\* 국가통계포털 KOSIS재해현황(업종별, 규모별 요양재해율) 참고

\*\*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제조업종별 에너지 소비량 참고

- **(현장실사)**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기대효과를 평가하고 지원항목 및 금액 등을 결정\*

\* 현장실사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최초 신청내역과 지원항목 및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사업수행절차,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인식교육 실시

<안전환경조성 현장실사 지표>

평가 항목	현장실사 지표	배점
현장 실사 (30점)	·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15
	· 기대효과	15

<에너지효율개선 현장실사 지표>

평가 항목	현장실사 지표	배점
현장 실사 (30점)	·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15
	· 기대효과	15

## 사. 지원절차

- **(사업수행)** 선정소공인이 공급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확정된 지원항목과 일치하도록 수행

### <공급업체 선정 기준>

구 분	세부기준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항목과 관련이 있는 업태와 종목을 운영하는 업체</li> <li>○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체</li> <li>○ 상시근로자 1인 이상(사업주 포함 2명) 업체</li> <li>○ 신청업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비속(자제), 형제자매 등 친족 관계의 공급업체는 선정 불가</li> </ul>
공사·개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관련법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한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증</li> <li>-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li> <li>-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li> </ul> </li> </ul>

- **(완료점검)** 사업수행이 완료된 선정소공인이 현장실사 및 계약에 따라 사업수행을 실시했는지 확인
  - 선정소공인은 공급업체로 자부담금 및 부가세를 지급하고, 정산서류\* (붙임3 참고)를 준비하여 제출
  - \* 전문기관에서 정산서류 작성지원 예정
- **(지원금 정산)** 선정 소공인이 제출한 정산서류 회계법인 검토 및 승인 후, **전문기관이 공급업체로 국고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사업수행 및 정산완료 후, 전문기관을 통해 품목검수, 지원 후 성과, 현장 만족도 등 지속 관리 예정

## 아. 가점(최대 5점)

구분	가점항목(점수)	가점기준	제출서류
1	집적지구 소공인(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내에서 지정된 업종으로 사업장을 영위중인 소공인</li> <li>- 세부 업종 및 지역은 [붙임2] 참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li> </ul>
2	풍수해보험 가입자(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소공인</li> <li>* 풍수해보험 보험기간이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풍수해보험 보험증권 (소상공인 보험)</li> </ul>
3	안전사고 有경험 업체(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요양 사실이 있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재해승인을 받은 업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재해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정부24, 근로복지공단)</li> </ul>
4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업체(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3년 이내, 근로자의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한 업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급여명세서 상 "건강검진비" 명시 필수</li> </ul>
5	재기지원 패스트트랙(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무조정자 패스트트랙 연계 지원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li> </ul>

\* 신청마감일 기준('25.2.28.)으로 해당여부 검토

\*\* 가점한도는 최대 5점이며, 증빙자료(제출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

## 자. 추진절차



### 3. 안전환경조성(집적지구)

#### 가. 신청대상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을 모집 (집적지구 충족기준 ~ 최대 50개 이하)하여 추천기관이 신청(2곳 내외)

\* (집적지구)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행정구역별 기준 이상으로 집적한 지역 [붙임2 참고]

행정 구역	기준
특별·광역시외의 읍·면·동	50인 이상(업체 수)
시(특별자치시·도 포함)의 읍·면·동	40인 이상(업체 수)
군의 읍·면	20인 이상(업체 수)

#### 나. 추천기관 역할

- 소공인 집적지구 내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 모집, 사업참여 소공인 행정지원 등

#### 나. 자격요건(2가지 요건 중 1가지 충족하는 자)

- 소공인 특화·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 \* '25년도 기준 소공인 특화·복합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만 해당
- 소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 정관 상 법인설립 목적에 소공인(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필수 반영되어야 하며 이 외, 설립목적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해석에 따름
- 신청 마감일 기준 ('25.2.28.)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내용
휴·폐업 및 부도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다. 신청기간 : '25. 1. 24.(금) ~ '25. 2. 28.(금), 18:00까지

라.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절차	
1단계	소상공인24(www.sbiz24.kr)접속 → 회원가입(대표자 회원가입)→사업자 정보 입력)및 로그인
2단계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선택, 모집공고 확인
3단계	[개인정보동의], [마이데이터제공동의], [자가진단] 등 각 순서대로 진행
4단계	[신청정보작성] 내용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후 [신청서제출] 클릭하여 접수완료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참고 사항	※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유에 관계 없이(시스템 오류 등) 마감시간(18:00 정각)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 시스템문의 1644-5302

### 마. 신청서류

구분	연번	제출서류	비고
필수 서류	1	<input type="checkbox"/> 안전환경조성(집적지구) 사업계획서	[붙임6] 양식 활용
	2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증명	1개월 이내 발급분
	3	<input type="checkbox"/>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법인 사업자는 '법인' 및 '대표자'명의 서류 모두 제출
	4	<input type="checkbox"/>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용, 말소사항포함 제출
추가서류 (해당시 제출)	5	<input type="checkbox"/> 정 관 (소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만 해당)	해당시 필수 제출

\*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는 소상공인24 시스템으로 작성

\*\*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바. 평가절차: 자격확인 → 서류평가 → 최종선정

\* 안전환경조성(집적지구) 추천기관 모집 마감 후, 소공인 별도 소상공인24접수 예정

- (자격확인) 추천기관의 자격요건 확인
- (서류평가) 추천기관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외부평가위원이 심의 후, 고득점 순으로 2개 기관 내외 최종선정

구분	평가지표	배점
지원필요성	· 소공인 집적지 이해도	10
	·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	30
	· 지원 기대효과	20
지원효과	· 개별 소공인의 예상 지원효과의 적절성	20
	· 사업 목표 달성에 따른 기대효과 및 공동 이익 가능성	20
<b>계</b>		<b>100</b>

\* 사업 참여 소공인은 공단에서 별도 평가 진행 예정(모집된 소공인 탈락 가능)

\*\* 평가 항목 및 배점의 상세내역은 추진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4. 접수 · 문의처

구 분	담 당 자	문 의
사업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안전환경조성) 한국표준협회	02-6240-4861, 4862, 4854
	(에너지효율개선) 한국스마트건설협회	02-2135-8089, 8966, 6573
시스템문의	소상공인24	1644-5302

## 5. 유의사항

- 신청·접수는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만 가능합니다.
- 신청서의 경우 신청기간 동안 임시저장상태 신청서는 작성·보완 가능하며, **신청완료(제출) 이후 수정 불가**합니다.
- 사업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의 미비나 누락, 신청 시 기재착오 등의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신청취소 또는 신청탈락)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소공인에게 있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여부 판단은 공단에 있습니다.
- 신청서, 현장사진,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공인은 공급업체 선정 시, 소공인의 대표와 특수거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거래법 부당 공동행위 위반(담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급업체로는 사업 수행이 불가합니다.
- 사업신청 소공인은 현장평가시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현장진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소공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 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사업수행 완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전문기관을 통해 지급요청과 함께 완료확인서 등 정산 서류 제출로 원활한 비용지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정부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본 사업의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 내 지자체· 타 기관 유사사업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수혜가 확인될 경우 신청취소, 선정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단, 기존 지원이력이 있으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신청할 경우, 별도 지원 가능(단, 사업장소재지·설치 희망 장소가 동일할 경우 지원 불가)

**붙임1**

**지원업종(중분류)**

대분류	분류코드	중분류	매출액 기준	상시근로자
제조업	C10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C11	음료 제조업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12	담배 제조업	80억원 이하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0억원 이하		

## 붙임2

## 소공인 집적지구 지역 및 업종현황

구분	지역	범위	업종코드
1	서울특별시	○ 금천구 독산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2		○ 성북구 보문동, 월곡동, 장위동, 종암동, 석관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3		○ 영등포구 문래동	• C24 (1차 금속 제조업)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 종로구 봉익동, 묘동, 원남동,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5		○ 종로구 종로1·2·3·4가동, 종로 5·6가동, 창신제1동, 창신제2동, 송인제1동, 송인제2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6		○ 성동구 성수동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7		○ 중랑구 면목동, 상봉동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8		○ 마포구 서교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9		○ 도봉구 창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0		○ 관악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1		○ 양천구 신월동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12		○ 광진구 중곡동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3		○ 동대문구 용신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4		○ 강북구 미아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5		부산광역시	○ 동구 범일동
16	○ 금정구 서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7	인천광역시	○ 동구 송현동, 송림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8		○ 서구 오류왕길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19	대구광역시	○ 중구 대봉1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20		○ 중구 성내동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21		○ 북구 노원동	•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2	광주광역시	○ 동구 서남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3		○ 동구 충장로 4가, 5가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24	경기도	○ 군포시 군포1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25		○ 포천시 가산면	• C32 (가구 제조업)
26		○ 양주시 남면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27		○ 시흥시 대야동, 신천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8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29		○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 C10 (식료품 제조업)
30		○ 화성시 향남읍, 팔탄면, 정남면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		○ 화성시 봉담읍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32		○ 안양시 관양동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33		○ 여주시 오학동, 북내면, 대신면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4		○ 광주시 초월읍, 오포읍, 광남동	• C32 (가구 제조업)
35		○ 김포시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6		○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7		○ 화성시 동탄5동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8	대전광역시	○ 대덕구 오정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9		○ 동구 정동, 중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0	강원도	○ 강릉시 사천면	• C10 (식료품 제조업)
41		○ 강릉시 주문진읍	• C10 (식료품 제조업)
42		○ 인제군 북면	• C10 (식료품 제조업)
43		○ 원주시 우산동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4	충청북도	○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5	충청남도	○ 공주시 유구읍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46		○ 금산군 금산읍	• C10, C11 (식료품, 음료 제조업)
47		○ 홍성군 광천읍	• C10 (식료품 제조업)
48	전라북도	○ 순창군 순창읍	• C10 (식료품 제조업)
49		○ 전주시 팔복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50		○ 부안군 진서면	• C10 (식료품 제조업)
51	전라남도	○ 무안군 청계면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2	경상북도	○ 영주시 풍기읍	• C10 (식료품 제조업)
53		○ 경산시 진량읍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4	경상남도	○ 김해시 진례면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5		○ 하동군 화개면	• C10 (식료품 제조업)

※ 집적지구 내 소공인은 해당 지역범위와 업종코드가 일치하여야 함

### 붙임3

### 지원금 정산서류 기준

※ 정부지원금 지급 요청(소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기관)시 아래의 지출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정산서류	정산서류 인정기준
전자세금계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국세청승인번호가 확인되는 전자세금계산서</li> <li>※ 종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li> </ul>
본건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인 위탁 내용(품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li> <li>※ 최저가 견적을 제시하는 공급업체를 선정</li> </ul>
비교견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적 내용(품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공급업체 본건적서의 위탁 내용과 비교가능한 타공급업체의 견적서</li> </ul>
사업자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li> </ul>
공급업체의 통장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업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통장</li> <li>○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명(또는 공급업체명)으로 개설된 통장</li> <li>※ 가상계좌, 평생계좌는 인정 불가 (단, 평생계좌번호를 부여받은 통장의 경우에도 일반 계좌번호로 기재할 경우 인정)</li> </ul>
이체확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의 5가지 사항이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로 자부담액과 부가가치세 입금 내역이 확인되어야함</li> <li>① 송금인명</li> <li>② 송금시각</li> <li>③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예금주명</li> <li>④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은행명</li> <li>⑤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계좌번호</li> <li>※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거래는 불인정</li> </ul>
폐기완료확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완료확약서 및 폐기물처리영수증 제출</li> <li>※ 교체가 아닌 개·보수 건의 경우 해당 서류 불필요</li> </ul>
완료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소공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li> </ul>

**붙임4****(해당 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양식**

※ 다음과 같이 주업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

최근창업한 1년 미만자로서 당기(직전회계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신고서(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포함), 면세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증빙자료 구비가 불가한 경우, 주업종확인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업체명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업종) (예 : 제조업+도소매업)		
주업종명(업종코드)* (예 : 식료품 제조업(C10))		

\* [붙임1] 소공인 업종 및 기준을 확인하여 부합하는 업종명과 코드기재

위와 같이 실제 영업 중임을 확인하고,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불가, 관련 국고보조금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



## 붙임6

## 안전환경조성(집적지구) 사업계획서

추천기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추천기관 유형	<input type="checkbox"/> 특화지원센터 <input type="checkbox"/> 복합지원센터 <input type="checkbox"/> 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		
대표자명		대표자 연락처	
실무자명		실무자 연락처	
주 소			

### 1. 집적지구 개요

#### <작성요령>

- √ 소공인 집적지 위치(읍·면·동단위), 업체 수, 업종, 집적지 형성배경 등 연혁, 소공인 집적지에 대한 현황(통계자료 등 용역보고서 내용 적극 활용) 등
- √ 소공인 집적지 위치는 행정구역분류 상의 읍·면·동으로 작성(행정동 기준)
  - \* 집적지 인근 동일업종 소공인 등을 포함한 집적지 현황지도 작성
- √ 소공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중분류로 작성하되 상세 지원업종은 별도 기재
  - \* (예) 의류,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안경테 제조)

위 치	* 행정구역 읍·면·동 기준
업종/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중분류 C코드
집적지도	

형성배경 및 연혁

○

-

집적지구 특성

○

-

소공인 현황 및 특성

구분	상시근로자		계
	1~4명	5~9명	
소공인수			

○

-

집적지구 당면환경

**<작성요령>**

√ 국내외 환경(젠트리피케이션, 원자재 가격 급등 이슈 등)

○

-

지원필요성 및 기대효과

**<작성요령>**

√ 소공인 집적지에 대한 지원필요성 및 정부지원 시 기대되는 효과  
◦ 정량적·정성적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통계자료 적극 활용)

○

-

○

-

## 2. 세부 내용

<p>클린제조환경조성 추진 배경 및 목적</p>	
<p>클린제조환경조성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p>	
<p>집적지구 소공인 현황 및 주요 생산품</p>	
<p>기대효과</p>	

### 3. 참여희망 소공인 현황

No.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1	식료품 제조업(C10)	주0000	000	000-00-000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No.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소(상)공인 확인 기준

1 지원대상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sup>1</sup> 중 소상공인<sup>2</sup>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sup>3</sup>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②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③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2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③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②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8. 11. 20	'20. 3. 25	(직전 사업연도) '19년 1월~'19년 12월
예시2	'19. 2. 5		(최근 12개월) '19년 3월~'20년 2월

#### ④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 분		내 용
확인 서류	상시 근로자 無 (택 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 근로자 有 (택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p>■ <b>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b>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p> <p>(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9.2.26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8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p> <p>■ <b>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 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b>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 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p> <p>(예시) 창업일: '17년 11월 2일, 신청일: '19년 1월 제출기간: '18년 1월 ~ 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18년 5월부터 1명 고용</p> <p>(필요서류)</p> <p>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p> <p>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p>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④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개정 2021.12.30.>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①~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①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②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③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④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⑤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업종 구분 방법**

□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❶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❷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❸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징구